

#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정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5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9. 6.

발의자 : 김정우 · 박주민 · 김병관  
문미옥 · 박찬대 · 윤소하  
정성호 · 신창현 · 박용진  
김경수 · 임종성 · 김삼화  
김광수 · 최경환 · 박남춘  
서영교 · 황주홍 · 김철민  
의원(18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을 원활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대통령당선인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인사 관련 자료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, 공직후보자의 사전검증 업무를 지원할 기관이 부재하여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새 정부에 적합한 인사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열람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,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무

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  
(안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4호 신설).

##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는 관계 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새 정부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) ① · ② (생략)  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5조(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 <u>③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.</u>  <u>이 경우 요청을 받는 관계 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u></p>
<p>제7조(업무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         1. ~ 3. (생략)  <u>&lt;신설&gt;</u>          4. (생략)</p>	<p>제7조(업무) -----  -----.          1. ~ 3. (현행과 같음)  <u>4. 새 정부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</u>  <u>5. (종전의 제4호와 같음)</u></p>